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23. 11



목차

제17	당 계획의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1.2	실시근거	1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2
1.4	계획의 내용	4
제23	장 대안의 설정 ······	7
2.1	대안의 설정	7
2.2	대안의 평가	8
제37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1	1
3.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1
3.2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2
3.3	평가항목의 설정	3
3.4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6
제43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2	2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개요 2	22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2	<u>?</u> 4
제57	장 주민 등에 의견수렴계획 ······ 2	9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	29
5.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수렴 계획	9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여수시의 지역발전과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장래 안정적인 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기후변화 대응 및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증설계획, 음식물류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시설계획 등 장래 수요에 대한 예측 필요
- 여수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가능하도록 장래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의 수립을 목적으로 함.

1.2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2.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거.폐기물·분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 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1.2.2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공개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14일 이상 공개하는 바임.

〈표 1.2.2-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2.3 환경부 소관법령에 따른 대상사업 해당여부

○ 본 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외에 환경부 소관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 해당여부 를 검토한 결과, 다음사항이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됨.

〈표 1.2.3-1〉 타 법령(환경부 소관법령) 관련 대상사업 해당여부

			해당	여부	비	고	
구분		관계법령 및 기준	입지 입지		입지	입지	
			후보지1	후보지2	후보지1	후보지2	
생태면적률 적용	0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	궤	당	○ 전략환경영향평	j가 대상사업	
대상사업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ч	8	(폐기물처리시설	설의 설치)	
자연경관영향	0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11 -1	0			
심의 대상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애당	해당없음			
건강영향평가	0	환경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11 =1		○ 전략환경영향평가 해당사업		
대상사업		시행령 제3조	애	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수질오염총량	0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케다	.a. o			
관리 대상사업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애딩	없음	-	_	
기흥범하여하며기	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립·녹색성장기본법 제23조	해당없음		_		
네이지ㅂ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연안육역	0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	해당	체다어으	○ 연안육역에	○ 연안육역과 약	
대상사업		한한한다합 제2호제1호	예명	해당없음	포함	1.23km 이격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2022. 04. ~ 2022. 12. ○ 타당성조사 용역

2023. 09. ~ 10. O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2023. 10. 04 ~ 11. 0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

2023. 11.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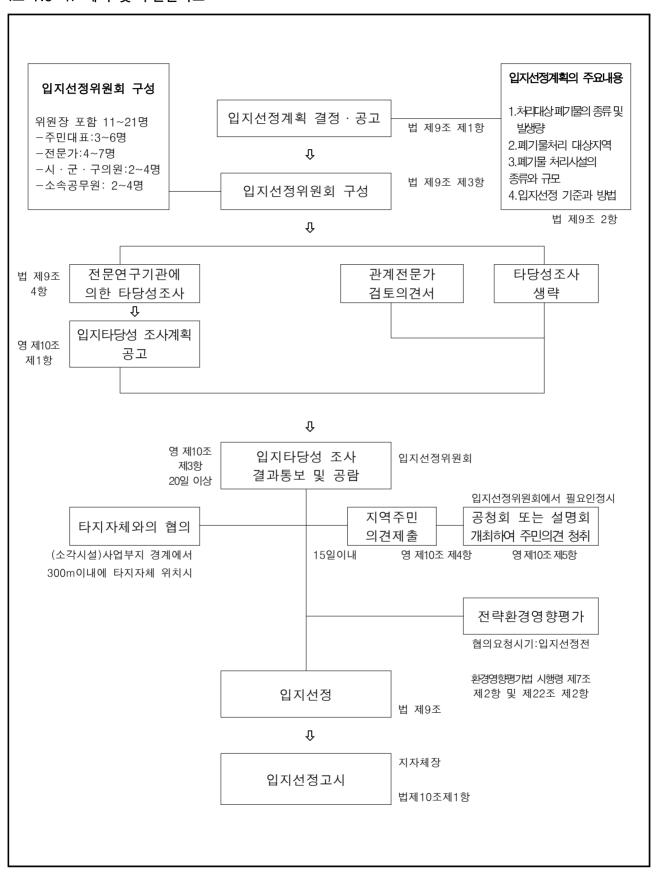
2024. 01. ~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주민 등 의견수렴

2024. 02. ㅇ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4. 04. ~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요청 및 협의

2024. 06. ~ ○ 환경영향평가 추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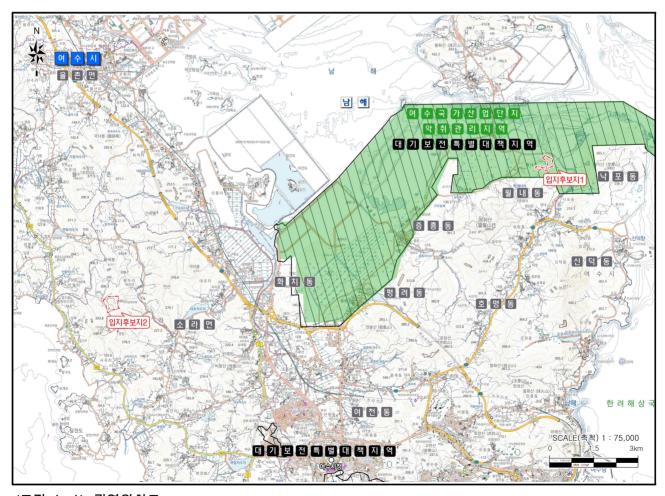
〈표 1.3-1〉계획 및 추진절차도



1.4 계획의 내용

1.4.1 계획의 개요

사		잍	<u> </u>		명	0	2030 자원	회수시설 건립사업				
사업 범위 - 임지후보지1 : 여수시 월내동 2-2번지 외 10필지 - 입지후보지2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971번지 외 5필지 ○ 면적 - 입지후보지1 : 113,793.9㎡ - 입지후보지2 : 204,109㎡				2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971번지 외 5필지								
			시 간	적	범 위	0	2022년~2029년(8년)/착공 및 준공(2027년~2029년)					
계	획	}	립	기	관	0	여수시					
사		ဋ	₫		비	0	2,459.4억원	원				
					계획구역	○ 여수시 전역(자체 처리지역 3개면 제외)						
_			0.1				처리대상	○ 여수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종량제 봉투 폐기물), 및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수 	주 요 사		업	내	용		시설용량	○ 소각시설 : 350톤/일 ○ 음식물 처리시설(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 150톤/일 ○ 재활용선별장(생활자원회수센터) : 30톤/일				



〈그림 1-1〉 광역위치도



〈그림 1-2〉 인공위성 현황도(입지후보지1)



<그림 1-3> 인공위성 현황도(입지후보지2)

제 2 장 대안의 설정

2.1 대안의 설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본 계획의 대안 선정은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을 선정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안의 설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계획비교, 입지 및 토지이용, 시기와 순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2.1-1〉 대안종류 및 선정방법

데이조리	UOL 선정보내	대인	선정	선정(계이) 나오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채택	제외	선정(제외)사유
계획비교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 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 을 대안으로 선정 	0	_	○ 행정계획수립(Action) 및 행정계획미 수립(No Action)에 따른 환경적인 비교 분석에 따른 대안 선정
입 지 및 토 지 이 용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계획지구 또는 그 경계의 일부 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0	_	○ 입지후보지 검토에 따른 입지 대안 설정
수단과 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 들을 대안으로 선정	_	0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을 대안으로 선정하지 않음.
수요와 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0	○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선정하지 않음.
시기와 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0	_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순서에 따른 대 안 설정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_	0	∘ 해당없음.

〈표 2.1-2〉 대안별 설정 개요

대안종류	대안내용	비고
No Action	○ 사업계획 미수립	게하비그
Action	○ 사업계획 수립	계획비교
대안1	· 이지호버지에 거든에 따르 이지 데이	
대안2	○ 입지후보지에 검토에 따른 입지 대안	입지 및 토지이용
대안A		
대안B	○ 사업계획 시기·순서 결정안	시기와 순서
대안C		

2.2 대안의 평가

2.2.1 "계획비교" 대안 검토

○ 행정계획수립(Action) 및 행정계획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2.1-1〉 "계획비교" 대안 검토내용

구분	계획수립안(action)	계획미수립안(No action)					
사업내용	 사업계획 수립 시행 소각시설 : 350톤/일 음식물 처리시설(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 스화) : 150톤/일 재활용선별장(생활자원회수센터) : 30톤/일 	○ 현상태 유지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상 변 화 없음.					
장점	 ○ 여수시 관내 발생 폐기물 안정적, 위생적 처리 ○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 유도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보건 위생 향상 ○ 폐기물 처리시 에너지 순환을 통한 자원 확보 ○ 주민편익시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현 자연환경 유지 가능○ 현 토지활용도 유지○ 지역주민등 갈등 및 민원 없음.					
단점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공사시 비산먼지, 소음 등의 생활환경 영향 발생 	 폐기물처리지연 및 비용증가 폐기물 처리시 발생되는 에너지순환자원 상실 주민편의시설 이용기회 상실 					
	0						
선정(안)	○ 계획수립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 및 에너지 순환을 통한 자원확보가 가능한 계획수립안(action)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2.2.2 "입지 및 토지이용" 대안 검토

○ 입지 및 토지이용에 따른 대안 검토결과, 입지후보지 입지 및 토지이용 대안에 따른 채택안은 "대안1"이 유리한 대안으로 검토됨.

〈표 2.2.2-2〉 "입지 및 토지이용" 대안 검토

구분	대안1	대안2					
위치도	11km 일이면록. 일이면록. 일시점 에너지점	# 三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후보지 위치	○ 여수시 월내동 2-2번지 외 10필지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971번지 외 5필지					
면 적	○ 약 113,793.9㎡	○ 약 204,109 m²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유틸리티	○ 상·하수도, 우수로, LNG, 전기, 기타 (통신 등)	○ 상·하수도, 우수로, 전기, 기타(통신 등)					
장점	 ○ 입지후보지 내 지장물 적음 ○ 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과 연계성이 높음 ○ 주변도로 접근성이 높아 차량 진·출입 용이 ○ 자원순환에너지 활용성 높음 ○ 기존 도시형 소각시설 부지에 인접하며 토지매입 불필요 ○ 유틸리티 활용성 높음(LNG 등) 	 ○ 입지후보지 내 지장물 적음 ○ 기존 채석장 사용으로 개발로 인한 지형 훼손 적으며 부지평탄화 작업완료로 공사기간 단축 및 토목공사비용 절감 ○ 주변이 임야로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적음 ○ 주변도로 접근성이 높아 차량 진・출입용이 					
단점	○ 개발로 인한 지형 및 식생훼손 ○ 2km 내 거주 인구수(216가구 414명 거주) 많아 민원소지 높음	○ 주민 편익시설 이용 효과 낮음 ○ 2km내 거주 인구수 많아(275가구 568명 거주) 민원소지 높음. ○ 시설 토지매입 필요로 개발비용 높음					
	0						
선정(안)		E시형 소각시설 부지에 인접하여 주변시설 및 설 설치 최소화 등으로 인해 "대안1"이					

2.2.3 "시기와 순서" 대안 검토

- 부지의 활용성 및 폐기물 처리 계획등을 고려하여 전체 시설 동시 계획과 순차적 시설계획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 입지후보지는 신규부지 및 기존 부지 활용성, 공사시 폐기물 처리 안정성, 경제성 등과 시설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부지내 소각시설과 유기성 바이오가스화시설 우선 설치 후 기존음식을 부지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도입하는 것이 기존 부지활용성 면에서도 적정한 "대안A" 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표 2.2.3-1〉 "시기와 순서" 대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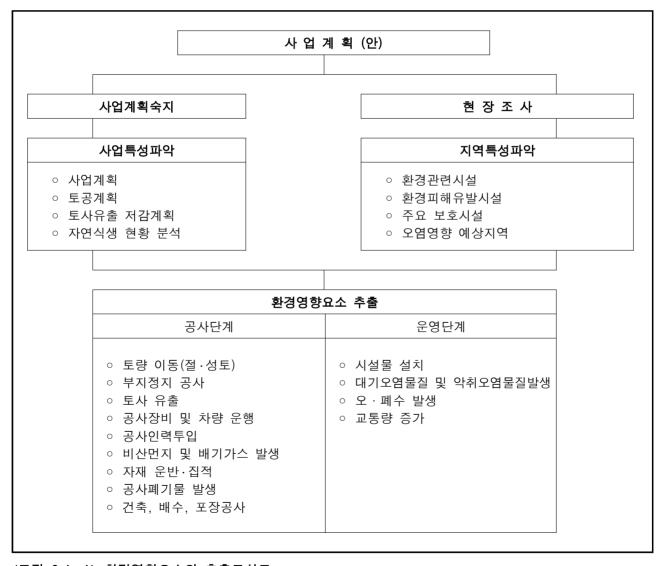
	구 분	대안A	대안B	대안C			
		(순차적 설치)	(순차적 설치)	(전체 동시 설치)			
	소각시설	① (신규부지)	① (신규부지)	① (신규부지)			
개요	유기성 바이오 가스화 시설	① (신규부지)	② (기존 소각 부지)	① (신규부지)			
	생활자원 회수센터	② (기존 음식물 부지)	③ (기존 음식물 부지)	① (신규부지)			
	신규부지 활용성	보통	종음	낮음			
검토	기존부지 활용성	보통	낮음	좋음			
내용	경제성 (재정부담)	보통	좋음	낮음			
	폐기물 처리 안정성	좋음	좋음	좋음			
2	검토내용	오가스화시설 신규부지 설치후 재활용시설 순차 설치(한정된 부지내 적정 설치 가능) ○ 신규시설 설치전까지 기 존 시설 운영으로 폐기물 처리 가능 ○ 2개 시설 동시 공사 후	설치(여유 부지 확보 가능)	동시 설치 및 동시 가동 가능(한정된 부지 내 집 약적 설치 필요) ○ 신규시설 설치전까지 기 존 시설 운영으로 폐기물 처리 가능 ○ 시설간 연계(협잡물처리 등) 가능 ○ 동시공사 진행으로 재정			
○ 신규부지 및 기존 부지 활용성, 공사시 폐기물 처리 안정성, 경제성 등과 선정(안)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부지내 소각시설과 유기성 바이오기 설 우선 설치 후 기존음식을 부지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도입하는 것이 기 활용성 면에서도 적정한 "대안A"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주) ①, ②, ③은 설치 순서를 의미함.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적 범위의 설정은 현지조사,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함.
- 평가항목 선정을 위한 계획의 특성 및 지역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 현지조사와 유사사업의 환경영향 등을 비교·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시 전단계에 걸쳐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 를 추출함.



〈그림 3.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모식도

3.2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방법은 Leopold가 고안한 행렬식 대조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상호평가는 상호관련성 크기를 부호로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작성된 행렬식 대조표는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음.

〈표 3.2-1〉 환경영향요소와 검토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평가항목		자연	환경의	보전					생활환	환경의	안정성				사회 · 경제환 경과의 조화성
단 계 별	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주변 환경 의	수 환경 의 보전							환경 기초	자원 · 에너	환경	
별 - -		동 · 식	자연 환경	및 생태 축의 보전	경관 에 미치 는	수 질	기	대 기	온실	악	토	소음	위생 · 공중	시설 의 적정 성	지 순환 의 효율	친화 적 토지 이용
	환경영향요소	물 상	자산		영향		상	질	가 스	취	뱡	진 동	보건	0	성	
	토 량 이 동 (절 · 성 토)				Δ							Δ				
	부 지 정 지 공 사	Δ	Δ		Δ			Δ	Δ		Δ					
	토 사 유 출	Δ	Δ		Δ	Δ		Δ								
공	공 사 장 비 및 차 량 운 행	Δ					Δ	Δ	Δ			Δ				
^	공 사 인 력 투 입					Δ										
단 계	비 산 먼 지 및 배 기 가 스															
	자 재 운 반 · 집 적							Δ				Δ				
	공사폐기물 발생											Δ				
	건 축 공 사	\triangle			Δ							Δ			•	
	배 수 공 사											Δ			Δ	
	포 장 공 사				A	Δ						A			Δ	
운	시 설 물 설 치				Δ									A		A
년 영 단	대 기 오 염 물 질 및 악취 오염 물질 발생															
단 계	오 · 폐 수 발생					Δ					Δ			A	Δ	
	교 통 량 증 가															

〈표 3.2-2〉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기준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3(●)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1(△)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2(■)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2(□)	악영향이 다소 있다.
+1(▲)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크기는 작다.	-3(○)	악영향이 크다.

3.3 평가항목 설정

3.3.1 관련 규정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규정사항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3-72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평가항목 중 본 개발기본계획과 부합되는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표 3.3.1-1〉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세부평가항목 관련 근거법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 3.3.1-2〉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전략환경영향평가)

구분	세부평가항목
개발기본계획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3.3.2 평가항목 선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023-72호, 환경부고시」에 의거하여 선정하였음.
-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주요 중 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항목을 일 반평가 항목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제외평가 항목으로 선정함.

〈표 3.3.2-1〉 평가 항목 설정

구 분	평 가 항 목
중점평가 항목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동·식물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수환경의 보전(수질), 환경기준 부합성(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위생·공중보건),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친환경적 자원순환),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일반평가 항목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자연환경자산), 환경기준부합성(기상),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표 3.3.2-2〉 중점 평가항목 설정

중점평가 항목	설정사유	평가내용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사업시행시 동·식물 서식지 변화	○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저감대책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지형분석 및 부지조성 공사시 토공사 및 토사발생에 따른 영향 예상	○현지조사 및 지형변화 예측, 토사유출 방지대책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시설물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	○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로 인한 영 향 평가 및 대책
수환경의 보전 (수질)	발생, 공사인력에 의한 생활오수 발생 예상	○ 공사시 홍수유출량 변화, 토사유출량 발생, 공사인력에 의한 생활오수 발생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운영시 오 · 폐수 발생 및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발생등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공사시 토공작업 및 운영시 시설물 연료 사용, 차량통행 및 시설운영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예상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운영시 시설물 연료사용 및 시설운영, 차량통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표 3.3.2-2〉계속

중점평가 항목	설정사유	평가내용
환경기준 부합성 (악취)	○ 운영시 폐기물로 인한 악취 영향 예상	○ 운영시 시설운영에 의한 악취 영향 검 토
환경기준 부합성 (온실가스)	○ 공사시 공사장비 및 운영시 시설물 운 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량 예 측 및 저감방안 수립
환경기준 부합성 (위생·공중보건)	○ 운영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피해 영향 예상	○ 운영시 건강영향평가 실시로 주변 영향 환경오염물질 평가 실시하여 검토
환경기준 부합성 (토양)	○ 공사시 장비가동, 지장물 철거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 예상 ○ 운영시 장비가동에 의한 영향예상	○ 공사시 장비가동, 지장물 철거 및 운영 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운영시 장비가동에 의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환경기준 부합성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가동 및 운영시 통행차량에 의한 소음 영향 예상	○ 공사시 작업장비에 의한 소음·진동도 및 운영시 통행차량 및 시설소음에 의 한 영향 예상 및 저감방안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및 분뇨 발생 량을 예측하여 처리방안 수립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부지조성공사 및 시설물 추가로 인하여 토지이용 변화 발생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파악 및 계획 검토

〈표 3.3.2-3〉 일반평가 항목 설정

일반평가 항목	설정사유	평가내용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 향 저감대책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대기예측을 위한 사업지구 주변 기상 현 황자료 조사	○10년 평균 기상 자료 현황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영향 미미	○환경기초시설 현황

〈표 3.3.2-4〉 제외평가 항목 설정

제외평가 항목	제외사유
수환경의 보전(수리·수문, 해양환경)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생활환경의 안전성(전파장해, 일조장해)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인구, 주거, 산업)	○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3.4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표 3.4-1〉에 제시한 바와 같음.
- 현황조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평가할 계획임.
- 영향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입지후보지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보전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함.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3.4-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구분	평가범위·방법		 설정사유
	3-10	<u> </u>		<u> </u>	· 조사내용		<u> </u>
		동·식	-식물상	현황조사	- 육상·육수 동·식물상 현황 ○ 조사범위 - 반경 0.1~0.3km 이내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생 및 식물 상, 동물상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 감방안 수립
	생물다양성·			영향예측	시행으로 인한 분류군별 변화 및 영향예측		
자 연 환 경 의	서식지보전	자 환 자	연 경 산	현황조사 영향예측	 ○ 조사내용 ─ 주요 자연환경자산 분포 현황 ○ 조사범위 ─ 여수시 및 월내동, 소라면, 입지후보지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예측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에 미치는 영향 예상 평가
보 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 지	전	현황조사	 조사내용 특이지형, 보전가치 지형·지질 현황 조사범위 여수시 및 월내동, 소라면, 입지후보지 조사방법 현지조사와 자료조사 사업시행 전·후 지형 변화 영향예측 공사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기본계획자료 분석 토공계획, 비옥토 발생, 토사유출 영향 기본계획자료 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 영 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표 3.4-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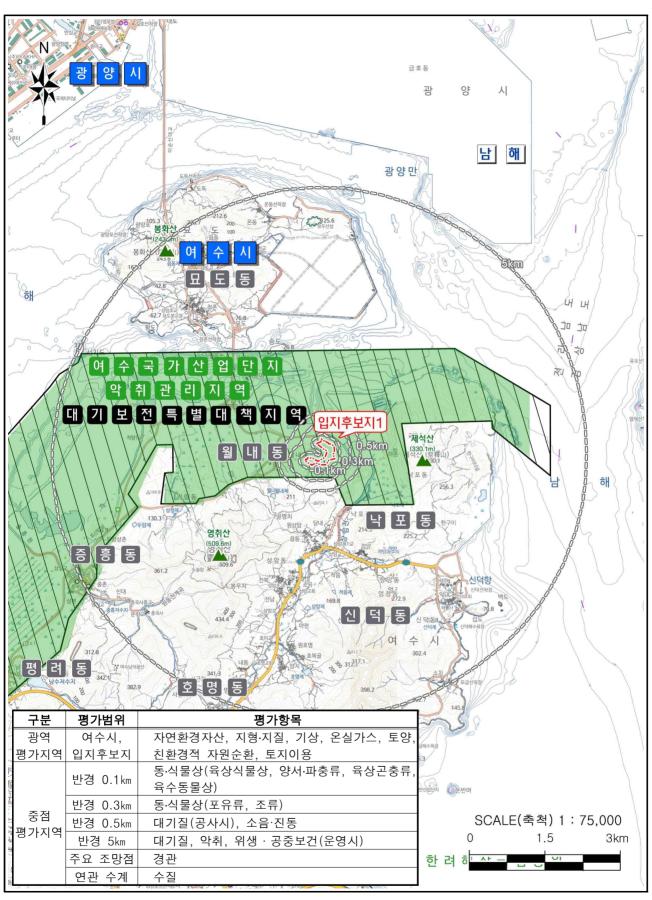
	평가항·	 목		구분	평가범위·방법		설정사유				
	주요 자연경관에	74		현황조사	 ○ 조사내용 - 경관상 보전가치지역 분포 현황 ○ 조사범위 - 입지후보지 및 주요 조망점 ○ 조사지점 -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0	부지정지 및 인공구조물 설치로				
자 연	미치는 영향	경	관	영향예측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정도,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변화 예측 사업시행후 경관 보전 대책 수립 사진촬영을 통한 경관변화 시뮬레이션 실시 		인한 경관 변화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환 경 의 보 전	수환경의			현황조사	○ 조사내용 - 입지후보지 연관 수계 ○ 조사범위 - 여수시 및 월내동, 소라면 - 입지후보지 및 관련 수계(해양) ○ 조사방법 - 현지조사와 자료조사	0	공사시 홍수유출량 변화, 토사유출 량 발생, 공사인력에 의한 생활오 수 발생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 안 수립				
	무선 8 기 보전	수	^수 질	<u> </u>			[2]	영향예측	 ○ 공사로 인한 영향예측 ─ 홍수량 산정 ─ 토사유출량 산정 ─ 오수 발생량 산정 ○ 운영에 따른 영향예측 ─ 오 · 폐수발생량 산정 ─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0	문영시 오·폐수에 발생량 및 초 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등 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기	상	현황조사	○ 국지기상 조사 - 과거 10년간(2013~2022년) 기 상 통계자료조사	0	대기질 영향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생 활 환 경 의	활 환 경 환경 의 기준 부합성 안	대 기	기 질	현황조사	 조사내용 대기오염원 분포 현황 토지이용 현황 대기질 현황 조사범위 입지후보지 및 주변시설 일원 조사방법 현지조사 	0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토공 이 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운영시 시설운영 및 이용차량에				
정 성				영향예측	○ 사업계획, 입지후보지 및 주변지 역 일원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 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시, 운 영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예측 ○ 예측모델 - AERMOD Model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표 3.4-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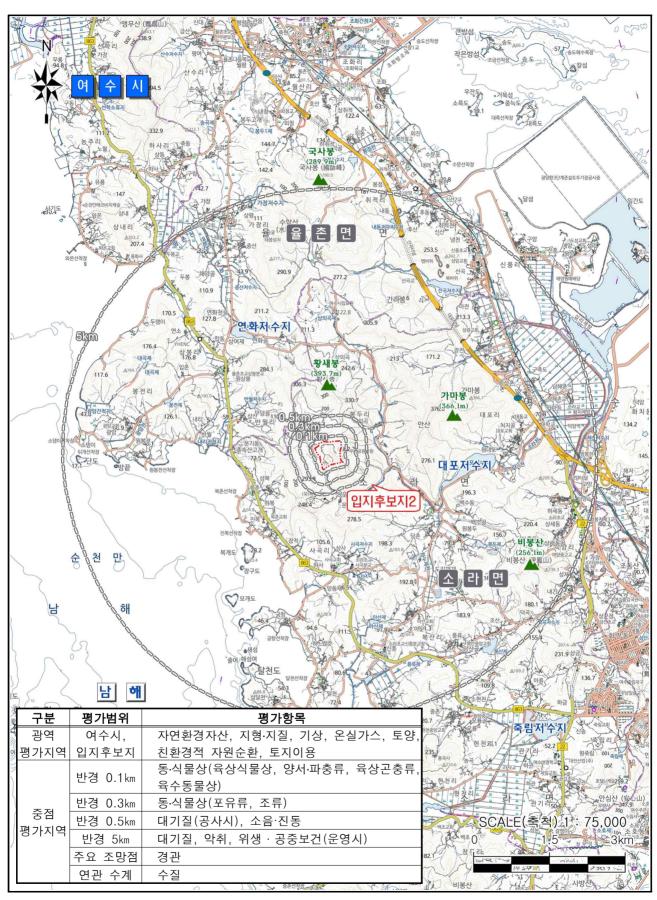
생 환경		평가항	목		구분	평가범위·방법	설정사유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악 :		현황조사	 막취 발생원 분포 현황 토지이용 현황 악취 현황 조사범위 입지후보지 및 주변시설 일원 조사방법 현지조사 	염물질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생 환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영향예측	○ 예측모델 - AERMOD Model	
영향에					현황조사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온실가스 저감 관련 법령 및 관련 계획 현황 등 관련 자료 검토 조사범위 입지후보지 조사방법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활한 경경 환경 기준 부합성 의 기준 부합성 안 정성 의 기준 부합성 안 전 경상 기준 보고 변환조사 토양 설립 현황조사 등양오염 현황조사 이 조사범위 의 조사방법 의 조사방법 의 조사방법 의 조사방법 의 조사방법 의 조사방법 의 조사내용 의 조사내용 의 조사내용 의 조사내용 의 조사배원 의 조사방법 의 조사내용 의 경향예측 의 조사내용 의 종 경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종 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존 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조사배용 의 존 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존 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존 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조사배용 의 존 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조사배용 의 존 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존 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존 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조사배용 의 존 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존 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존 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조사배용 의 존 기조시설 현황 의 조사배용 의 조사	생				영향예측		
영양예측 공정 영향여부 예측 - 소사내용 - 소유·진동 발생원 현황 - 소유·진동 현황 - 소유·진동 현황 - 주변 정온시설 현황 - 조사범위 - 입지후보지 및 주변 정온시설 ○ 조사방법 - 현지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교통소음 영향예측 의장시계 및 유명시 소유·진동 영향예측 의장시계 및 유명시 설현황 ○ 조사범위 - 현지조사 및 원내동, 소라면, 입지후보지 ○ 운영시 건강영향평가 실시로 지역피해 영향예측 및 저김 수립 -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 유명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변지역피해 영향예측 저김 수립	환 경 의 안	기준	토?	,	현황조사	- 토양오염 현황조사 - 토양오염원 분포 현황조사 ○ 조사범위 - 입지후보지 ○ 조사방법	
- 소음·진동 발생원 현황 - 소음·진동 현황 - 주변 정온시설 현황 - 조사범위 - 입지후보지 및 주변 정온시설 - 조사방법 - 현지조사 - 영향예측 용당에스지역에 대한 예측 평가 - 환경기초시설현황 - 조사범위 - 환경기초시설현황 - 조사범위 - 현황조사 및 월내동, 소라면, 입지후보지 이 조사방법 - 현지조사 - 연수시 및 월내동, 소라면, 입지후보지 이 조사방법 - 현지조사 - 현지조사 - 연수시 및 장대동, 소라면, 입지후보지 이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 연영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변지역피해 영향예측	성				영향예측		
영향에속 향 예상지역에 대한 예측 평가 ○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현황 ○ 조사범위 현황조사 - 여수시 및 월내동, 소라면, 입지후보지 ○ 운영시 건강영향평가 실시로 지역피해 영향예측 및 저김 수립 ○ 운영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변지역피해 영향예측					현황조사	- 소음·진동 발생원 현황 - 소음·진동 현황 - 주변 정온시설 현황 ○ 조사범위 - 입지후보지 및 주변 정온시설 ○ 조사방법 - 현지조사	운영시 교통소음 영향예측 및 저 감방안 수립
○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현황 ○ 조사범위 의 생 현황조사 - 여수시 및 월내동, 소라면, 입지후보지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 운영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주변지역피해 영향예측			L		영향예측		
▮ │ │ │ │ │ │ │ │ │ │ │ │ │ │ │ │ │ │ │			· 공	중		 ○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현황 ○ 조사범위 ─ 여수시 및 월내동, 소라면, 입지후보지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 운영시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 운영시 건강영향평가 실시로 주변 지역피해 영향예측 및 저감방인 수립

〈표 3.4-1〉 계속

	평가항:	목	구분	평가범위·방법	설정사유
생 활			현황조사	○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 조사범위 - 여수시 및 월내동, 소라면, 입지후보지 ○ 조사방법 - 자료조사	 공사시,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오수,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에 따른 적정처리 여부 운영시 반입폐기물 처리계획 검토
환 경			영향예측	환경오염물질 발생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검토	
의 안 정 성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 ^조 자원순혼		○ 조사내용 -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 조사범위 - 여수시 및 월내동, 소라면, 입지후보지 ○ 조사방법 - 자료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폐기물 성상	○ 공사시 공사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폐유 발생, 수목 훼손으로 임목폐기물 발생 등 영향예측 및 저 감방안 수립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 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토 지 이 용	현황조사	별 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 조사내용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사업계획, 관련계획 검토 조사범위 여수시 및 월내동, 소라면, 입지후보지 조사방법 현지조사와 자료조사 사업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영향예측 기존 자료 및 유사사례 조사	 자원회수시설 조성으로 인한 토지 이용변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그림 3.4-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입지후보지1)



<그림 3.4-2> 평가대상지역 설정도(입지후보지2)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개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환경영향평가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심의 의결함.

4.1.1 개최방법

ㅇ 서면 심의

4.1.2 개최기간

○ 서면 심의기간 : 2023년 10월 4일(수) ~ 11월 3일(금)

4.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심의위원회 구성(11명) : 위원장 1명, 위원 10명

〈표 4.1.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위원 명단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위원장	여수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심○○	_
2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문〇〇	협의기관 공무원
3	위원	여수시 자원순환과	주무관	신〇〇	지자체 공무원
4	위원	신성엔지니어링	상무	0 00	민간 전문가
5	위원	KEI 환경평가본부 공공인프라 평가실	선임연구위원	안○○	협의기관 민간전문가
6	위원	여수시 산단관리과	주무관	남○○	지자체 공무원
7	위원	삼일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역발전 협의회장	M00	주민대표
8	위원	여수시 소라면 봉두3리	이장	임○○	주민대표
9	위원	여수환경운동연합	팀장	정○○	시민단체
10	위원	KEI 환경평가본부 국토정책평가실	선임연구위원	하○○	협의기관 민간전문가
11	위원	전남대학교	교수	조○○	해양관련 전문가

주) 서○○ 위원(삼일동 주민대표) : 의견 미제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요청 알림 공문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여 수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심의 개최 알림(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 1. 귀 기관(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3. 아울러,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평가 준비서를 검토하시고 의견서를 2023. 11.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개요

- 사 업 명: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심의기간: 2023. 10. 4. ~ 2023. 11. 3.
- 심의방법: 서면 심의
- 심의내용: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사항 등
- 제출방식: 이메일(sv28@korea.kr)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1부(별도 송부).
 - 2. 심의 의견서 1부(별도 송부).
 -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여 수 시 (1)

수신자

주무관 서 자원시설팀장 신 자원순환과장 ^{전결 2023, 10, 4,} 심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3090 (2023. 10. 4.) 접수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 www.yeosu.go.kr

전화번호 061-659-3846 팩스번호 061-659-5824 / sy28@korea.kr / 비공개(6)

『청렴 여수, 바른 시정』시민과 함께 합니다.

1/1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화경영향평가형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파이 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관련 법규, 배뉴일, 지침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현지조사 및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환경보전했앙을 수립하시기 바람.
- 또한, 본 계획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과 연계되도록 평가자시기 바라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정보전목표는 평가항목별 특성, 입지적 여건,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여 설정하시기 비라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기원, 소음・건동, 악취, 수권, 토양 등 주요 환경영향 조사 및 영향예측 시 주변 민감시 설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3.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은 기존 지형을 고려하고 기 개발된 시설이 입지할 경우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하시기 바람.
- 4. 대안
- 대안 설정은 대안 종류 중 본 계획에 적용할 대안으로 설정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의 작성 방법"에 따라 3개 이상 설정하고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여야 함.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항목별 현황조사·예측평가는 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를 참고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항목별 특성용 고려하여 사업시했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용 포함하여야 한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준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시기 바람, 다만,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담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추진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심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신 여수시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보냄[여수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 1 여수시 자원수화과-33090(2023 10 4)ㅎ 과려인니다
- 귀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따라 심의 요청한 ' 여수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의건을 불입과 같이 보내드리니, 전 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 심의의견서 1부. 끝



주무관 문 ^{주무관} 김 과장 류

협조자

시행 환경평가과-6910 (2023. 11. 3.) 접수

접수 자원순환과-37281 (2023. 11. 3.)

우 61945 - 광주광역시 서구 개수로 31 환경관리국 환경평가과 / http://yeongsan.me.go 전화바호 062~410~5246 - 럭스번호 062~410~5249 / guswis063@me.go.kr / 비공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

[여수시 2030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 총괄 의견

- 동 계획은 전남 여수시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입지의 적정성, 운영 시 오염물질 처리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저갑대책이 수립·제시되어야 함
- 본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만, 본만)를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설정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 2. 토지이용 계획안 및 대안
-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시기·순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 (Action, No action 포함)을 설정하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함
 - 입지 후보지별 동·식물상, 자연환경, 대기절, 악취, 지형훼손에 따른 생태축 영향 등을 정량 비교·평가하여 최적안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3.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 항목 설정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세부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및「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등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어야 함
 - 환경 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 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동 사업의 특성 상 대기질(건강영향평가 대상물절 표반)에 대한 영향이
 큰 사업이므로 현지 조사 시 계절적 변동이 고려되도록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현지 조사 실시 필요
- 여수 지역의 생활폐기물(가면성 폐기물) 발생량 통계 및 발생 동향 등을 제시하고, 계획 규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림계획
- 인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공합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등 계획내용 및 계획 수립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이해가 용이하게 설명되도록 계획하여야 합(전문용이 사용 자제)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현의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 생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5.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른 초안의 공고·공람,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절차 등 적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023. 11. 3.

심의위원 문

화경영향평가형의회 신의결과 투부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023.1)를 참고하고 계획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야 한.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O 환경보전목표는 관련 법규 검토와 계획 및 인지 통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
- 2 저라하겨여하며기 데사기여이 서저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023.1) p.284의 "평가사업별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대기질·악취 평가범위는 5km로 설정하고, 그 외 평가 항목은 계획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O 계획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구상안을 설정하여야 함.

O 대안 설정은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 종류별로 2개 이상의 시나리오 구상 안을 설정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제시 되어 있으며 평가준비서에 제시한 대안은 적정하게 검토된 바, 계획비교안은 "계획수립 안(action)", 임지 및 토지이용안은 "대안 1", 시기와 순서는 "대안 A"로 검토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O 평가항목 :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평가항목으로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 평가범위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023.1) p.284의 "평가사업별 대기절 약취 평가범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대기절약취 평가범위는 5km로 설정하여야 함
- 평가방법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023.1) 참고하여 평가항목별로 설정하여야 한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령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함
-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O 여수시 폐기물 처리현황을 고려하고 본 계획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본 계획의 직정성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2023. 1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신

화경영향평가혐이히 신이격과 통보서

(2030 자원히수시설 건립사업 저략화경영향평가)

O 본 계획은 자원하수시석(소간시석 음식문 처리시석 등)이 대상이바 계획이 통석을 고려하여 평 는 계속도 서스코가(리도)다시하는, 요구를 시다(기를 5)에 데라진다, 계속고 그것을 보더하여 당 가항목범위방법 등을 설정하고 환경영황평가법 및 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 기타 법규 등을 검 토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한 환경단역표 설정은 「환경영환평가법」제5조에 따라 설정하고 또한, 본 계획의 특성 및 최적 때만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2 저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성정

- .. 년기단80808기 배양자기의 물명 이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 대기질, 약취,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평가범 위 5㎞ 설정은 적정함.
- O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항목은 처리대상폐기물이 여수시 전역에 해당하므로 입지후보지 및 여수시 관내로 설정 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3. 토지이용 구상만

- O 토지이용계획은 계획 특성, 입지 여건,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 경우 생태면적률 40% 이상 확보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4 관련)

- O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에 따라 대안 설정은 3개 이상으로
- 설정하고 각 대안 종류별로 2개 이상의 시나리오 구상만을 설정하여야 함. 입지 및 토지이용 대한 비교시 기존 시설 부자에 시설계획하는 방안과 신규 부자를 계획하는 방안에 대한 환경적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 항목은 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수환경의 보전(수질), 환경기준 부함성(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위성·공중보건, 토양,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야 함.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하고 관련 규정 및 안내서를 참조하여 설정하여야 함. - 대기질 현지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p.120), 2023. 01, 환경부」를 참고 하여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실시하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O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의견수렴을 실시하되 평가 대상지역 주민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중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반영 여부 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O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연관성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 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현의회 위원

글로벌 환경 싱크탱크 KEI 2030



하군화경여구워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검토의견 회신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자원순환과-33090(2023.10.04)호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 검토의뢰한 환경
- 2. 영향평가협의회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 을 회신합니다.

붙임: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검토의견 1부. 끝.



당당 실장

시행 환경평가본부-23819 (2023, 11, 7,) 접수 자원순환과-37709 (2023, 11, 7,)

전화번호 044-415-7312 팩스번호

/ jyan@kei.re.kr

/ 비곤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 본 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내에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350톤/일, 음식물처리시설: 150톤/ 일, 재활용선별장: 30톤/일)을 신설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 의견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아

- 급회 평가준비서에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해 2개의 후보지를 제시하였음 전략화경영 향평가서 작성 시에는 평가 대상 항목별로 각 후보지에 대한 비교·분석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선정 후보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소각시설 계획용량이 350톤/일 규모로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는 계획 용량 산출 방법론 및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계획 용량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후보지 1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므로 금회 계획 시설의 추가 운영에 따른 누적 영향을 면밀히 비교 · 분석하여야 함
- 후보지 2는 주변으로 하천 및 산림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동·식물의 성장 및 활동 시기 를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금회 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 금회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계획이므로 지역 주민에게 금회 사업에 관한 관 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입지적 측면에서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 람직함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의견없음

2023 11 05

심의위원 안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수신 자원수화과장

(O.T.)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건서 제목 제출

시

자원순환과-33090 (2023, 10, 4.) 호와 관련하여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의 환경평가준비서 검토의견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1부



주무관 협조자 산단환경관리

산단환경관리 2023. 11. 3

시행 산단환경관리과-11032 (2023, 11, 3,) 우 59673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2킬 13,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 / www.yeosu.go.kr 합관제센터 1층 (주삼동)

전화번호 061-659-2812 팩스번호 061-659-5867 / kakce@korea.kr

『청렴 여수, 바른 시정』시민과 함께 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2023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 등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장래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함으로 평가항목 및 범위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4. 대안의 설정 : 의견 없음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의견 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7. 기 타 : 의견 없음

2023. 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남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화경영향평가현의회 심의격과 통보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괔의겨

| |대안1과 대안2의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편파적인 내용을 서술되어 수정을 요청합니다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환경보존의 설정
- 전문가 지식이 필요한 내용으로 이해 어려움 해석 요청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문가 지식이 필요한 내용으로 이해 어려움 해석 요청

3. 토지이용 구상안

- 전문가 지식이 필요한 내용으로 이해 어려움 해석 요청

4. 대안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6장 대안의 설정 . 나 입지 및 토지이용 대안 검토 장점 단점 표기의 해석이 엇갈린 부분이 상이 함

- 효율적 폐기물 수집운반 : 여수시민의 주거지 생활 폐기물임.

대안1 부지로 수집운반 용이 (출 . 퇴근 교통체중 심각)

- 예 : 롯데케미칼(중흥)에서 석창사거리까지 퇴근시 약1시간 소요
- 대안1 대안2 주변도로 접근성 또한 용이 하므로 차량 진출입이 용이(동일한 조건) - 대안1 대안2 자원순환 에너지 활용성 높음(동일한 조건)
- (목적이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이므로 동일함)
- 대안2는 자원순환시설 설립시 부지 평타작업 완료로 공사기가 단축과
- 토목공사비용 절감으로 유틸리티 활용 설비 비용으로 전환 가능 - 대안1의 진입도로 개설 및 토지매입 불필요의 장점중에서
- 대안2 또한 진입도로 토지보상이 완료 되었으며 도로 포장공사 2024년 개시
- 대안2 진입도로 개설필요 : 도로 토지 보상 완료 2024년도 공사 시작함(단점 삭제 요청)
- 대안2 토지매입 및 부대시설 설치 필요로 개발비용 높음(삭제요청)

부대시설 설치필요(표기되어 있지 않은 부대시설임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명확하게 표기 바람) 3)선정(안)

- 대안1을 적정한 대안으로 선정함 <<<< 표기 삭제요청

대안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가벼운 문구 요청 또한 장.단점을 법리적인문제,통계적인문제등 명확하게 구분 할수 있을때 대안 의견을 제시 바람

-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등
- 전문가 지식이 필요한 내용으로 이해 어려움 해석 요청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6장 대안의 설정 . 나 입지 및 토지이용 대안 검토, 장 . 단점에서 2km 범위 주민을 민원인으로 구성 하였으니 2km 범위내 주민(민원인) 찬성 동의 51% 필요함
- 7.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여천산단내 폐기물 처리용역 환경영향평가 아닙니다
- 여수시민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용역 환경영향평가입니다
- 장전 1) 축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으로 위하 수진유바시 차량유해이 분폐하
 - 대안1 보다 대안2가 폐기물 수집 운반시 원활하게 차량 운행가능
 - 2) 부지의 평탄화 작업이 완료되어 공사기간 단축과 토목공사비와 관리비 비용 절감 3) 주민총회를 거쳐 51%이상의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입지 신청서를 제출함 (민원 최소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의견

- 현재 여수시의 1일 소각량이 100톤 규모로 운영중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소각시 설을 1일 350톤 규모로 건립하는 것은 인구증감 대비 규모가 매우 큼.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가면성 폐기물 소각시설 보다는 재활용선별장의 용량 을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여수시 환경보전계획(2019년~2023년)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처리방법 중 재 활용 폐기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수립을 목적으로 함에 재활용 폐기물 처리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입지 후보지 1은 악취관리지역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므로 소각장 설치시 보다 엄격한 관리 수준이 요구 됨.

3. 토지이용 구상안

○ 입지 후보지 1은 위성지도 상 후보지가 산이므로 개발 시 대체녹지 조성을

4. 대아

○ 대안 선정(안)대로 진행하되 대안C로 3개 시설 모두 동시설치.

○ 대체녹지 불산 검출 사례를 참고, 후보지 토양 조사 횟수와 조사지점을 늘릴 것과 표층-심층 모두 조사를 요구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실병회 개최시 전문 진행촉진자 섭외, 타운 홀 미팅 형식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과 시정부 등 이해당사자 간에 질서 있게 의견 개진과 경청하는 방 식으로 진행 바람.
- 진행 단계에 따른 환경변화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단계별 주 민 의견 제시 방식, 수렴 가능 정도 등을 구분하여 일정을 제시해야 함.
-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40 여수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220톤, 음 식물 자원화시설은 1일 150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1일 100톤 증설로 계획되 어 있음.
-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수거사업, 일반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 여수시의 폐 기물 감축을 위한 진행 사업에 비해 1일 처리용량 350톤 규모의 소각시설 계 획은 목표치가 매우 녹음.
-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여수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맞춰 재활 용 자위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시설 용량을 더 늘려 야 할 것임.

2023. 11. 0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글로벌 환경 싱크탱크 KEI 2030

한국환경연구원



수신 여수시장(자원순환과장)

KEI⁵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검토의견 회신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자원순환과-33090(2023.10.04)호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 검토의뢰한 환경 2. 영향평가협의회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 의 기사하다

불의 : 2030 자원하수시설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이히 검토이견 1부 끝



당당 본부장

협조자

시행 환경평가본부-24012 (2023, 11, 10,) 전수 자원순화과-38282

우 30147 성 생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백연구단지 B동 8-11 / 충

전화번호 044-415-7754 팩스번호

(2023, 11, 10,)

[별기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口孝哥의方

O 본 건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 가준비서에 대한 서면심의 통보서로, 아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한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O 의견없음
- 3. 토지이용 구상안
- O 의견없음
- 4. 대아
- 입지 대안 검토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61쪽), 입지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에 더하여 입지 선정 관련 다양한 요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분석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힘 - 특히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의 경우에 입지로 인한 지역사회 주민들에 다양한 이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입지 대안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
-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O 의견없음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인포그래픽스 등 알기쉬운 자료를 제작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O 의견없음

2023, 11, 0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하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팔 의 견

- 사업대상지(대안 1)가 위치한 지역은 광양만 특별관리해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사업시행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실, 오.폐수 등에 의해 해양생태계 영향이 우려된. 인근 유역 및 해역 환경 및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영향을 저감하 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합.
- 평가항목·범위결정 등은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 1 화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환경영향광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01, 환경 부」, 「환경영향광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023-72.8, 환경부, 를 참고하여 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적절하게 설정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O 대상지역의 설정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후보지 및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에 대하여 주요 환경 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을 적절하게 설정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O 적절하게 구상된 것으로 판단됨.
 - 4. 대아
- 계획비교, 입지 및 토지이용, 시기와 순서 등으로 대안을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되며, 최종 대안으로 선정한 계획수립, 대안1, 대안 A 대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 범위·항목·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O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함.
-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O 해당 없음.

2023. 1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조

제5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계획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본 사업 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나주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이용하여 공개함.
-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14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함.

5.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수렴 계획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9조에 준하여 실시할 계획임.

〈표 5.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수렴계획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일로부터 20일 이내 해당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 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 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	 여우시성 홈페이지 (www.yeosu.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초안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의 거 초안 공고·공람 실시 - 공람기간: 20~40일 - 신문공고: 일간신문, 지역신문	○ 신문공고 - 일간신문, 지역신문 2개소 각 1회 이상

〈표 5.2-1〉 계속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의견수렴계획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주민 30명 이상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주민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경우 	○ 환경영향평가법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요건 에 해당될 경우 개최할 예정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기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 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	 에재장소 여수시청 홈페이지 (www.yeosu.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게재기간 14일 이상